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585
----------	-------

발의연월일 : 2026. 3. 18.

발 의 자 : 이훈기 · 이주희 · 박지혜
박홍배 · 김 윤 · 박지원
정진욱 · 최민희 · 이광희
진성준 · 곽상언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민적 관심이 큰 체육경기대회 및 주요 행사를 ‘국민관심 행사등’으로 고시하고, 해당 행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의 성장과 함께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이 매우 큰 국제 스포츠 행사에 대한 중계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특정 플랫폼 또는 유료 서비스 중심의 독점 중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 경우 국민 다수가 해당 행사를 자유롭게 시청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며, 국민적 관심행사가 갖는 공공적 성격과 방송의 공익성에 비추어 보편적 시청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현행 제도는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와 중계권 제공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중계권 독점이나 과도한 경쟁을

방지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으며,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장 경쟁이 방송 생태계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해당 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일반 국민이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또한, 특정 플랫폼을 통한 독점적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제공, 공동 중계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통한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 명확화 및 보편적 시청권 보장 기준 정비

(안 제76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관심행사등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하계·동계 올림픽 경기, FIFA 월드컵 본선 중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이 출전하는 경기, 월드컵 개막전·준결승·결승 경기 등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관심행사에 포함하도록 규정함. 또한, 국민관심행사등에 대

한 중계방송권자등이 일반 국민이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해당 행사를 시청할 수 있도록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중계권을 제공하도록 하여 보편적 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함.

나. 국민관심행사등의 독점적 중계 방지를 위한 권고·명령·조정 절차 마련(안 제76조제6항 신설)

국민관심행사의 중계권을 취득한 사업자가 해당 행사를 유료 서비스 또는 특정 플랫폼에서만 독점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중계권 제공, 공동 중계 또는 부분 중계 등에 관한 협의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함.

다.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경쟁 완화를 위한 공동계약 권고 제도 도입(안 제76조의4)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권 확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도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하여 방송사업자,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되는 협의체를 통해 공동 중계권 확보를 위한 공동계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공동 중계권 확보를 위한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보편적 시청권 보장과 방송시장 안정성을 도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2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5의2.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라 함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를 말한다.

제76조제2항 후단 중 “들어야 한다”를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국제경기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관심행사등에 포함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시청할”을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동계·하계 올림픽대회
 2.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의 개막전, 준결승, 결승 및 해당 대회의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본선 경기
-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자가 해당 행사를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유료 방송 또는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를 통하여서만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계방송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중계방송권 제공
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와 국민관심행사등의 공동 또는 부분 중계에 관한 협의
3. 그 밖에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조치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조치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계방송권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계방송권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3제4항 중 “방송사업자”를 “중계방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송사업자”로 한다.

제76조의4의 제목 중 “중계방송권의”를 “중계방송권 협의체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방송사업자 또는 중계방송권자등에게”를

“다음 각 호의 사업자로 구성되는 중계방송권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방송채널사용사업자
3.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방송권자

② 협의체의 행위는 국민관심행사등의 공동 중계방송권 확보를 위한 범위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협의체를 통한 중계권료 분담 및 중계방송권 배분에 관한 협의 및 결정은 각 사업자의 도달 범위, 시청 점유율, 매체 특성, 해당 행사를 통한 예상 광고 수익 및 부가 수익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91조제1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6조의4에 따른 중계방송권 협의체의 협의 또는 결정과 관련된 분쟁

제108조제1항에 제1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3. 제7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편적 시청권 보장에 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되는 국민관심행사등에 관한 중계방송권 계약에 대하여는 그 계약 체결 시기와 관계없이 제76조 및 제76조의4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자 및 시청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 설>

<신 설>

③ 국민관심행사등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중계방송권자등”이라 한다)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

④·⑤ (생략)

<신 설>

-----들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국제경기대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관심행사등에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제올림픽위원회가 주관하는 동계·하계 올림픽대회

2.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축구대회의 개막전, 준결승, 결승 및 해당 대회의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출전하는 본선 경기

③ -----

-----추가 비용 없이 시청할-----

-----.

④·⑤ (현행과 같음)

⑥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국민관심행사등의 중계방송권자가 해당 행사를 다른 방송사업자 또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특정한 유료 방송 또는 부가통신역무(「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가통신역무를 말한다)를 통하여서만 송신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중계방송권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리적인 조건의 중계방송권 제공

2. 지상파방송사업자 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와 국민관심행사등의 공동 또는 부분 중계에 관한 협의

3. 그 밖에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조치

⑦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6항의 조치를 위한 사실관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 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 ③ (생략)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방송사업자 및 중계방송권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중계방송권의 총계약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76조의4(중계방송권의 공동계약 권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

중계방송권자,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중계방송권자, 지상파 방송사업자 및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제공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6조의3(보편적 시청권 보장을 위한 조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계방송권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76조제6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방송사업자-----

⑤·⑥ (현행과 같음)

제76조의4(중계방송권 협의체에 대한 공동계약 권고) ① -----

제91조(조정외 개시) ① 제35조의 3제1항에 규정된 자들 상호 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각 사업자는 제35조의3에 따른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이하 “방송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5.·6. (생략)

②·③ (생략)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1의2. (생략)

<신설>

12. ~ 28. (생략)

②·③ (생략)

광고 수익 및 부가 수익 등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91조(조정외 개시) ① -----

-----.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76조의4에 따른 중계방송권 협의체의 협의 또는 결정과 관련된 분쟁

5.·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제108조(과태료) ① -----

-----.

1. ~ 11의2. (현행과 같음)

11의3. 제76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12. ~ 2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